

## 투자금의 용도 제한

안녕하세요. 김진기 변호사입니다.

보통 스타트업은 여러 단계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합니다.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투자를 받았다면, 투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사채가 아닌 신주를 발행했다면 상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하지만 **투자계약서상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,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**

###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

투자계약에 있어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면,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회계 및 감사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연 1 회 또는 반기별로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투자금의 사용에 대한 실사를 받도록 규정할 수도 있고, 회사 스스로 투자금의 사용처를 반기/분기별로 보고 및 통지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.

이처럼 투자금 사용에 대한 투자자의 감사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서 일정한 경우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만일 투자자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회계 및 감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회사가 그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투자금의 사용 용도 위반은 물론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.

### 용도 제한 위반의 책임

투자계약에서 투자금의 용도를 정했다는 것은 회사와 투자자,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투자계약이라면 이해관계인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. 즉, **회사가 투자금을 투자계약에서 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**을 구성합니다. 회사(및 이해관계인)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및 위약벌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신주가 발행되고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및(또는)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또한, 투자금을 회사 운영이 아닌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, 처음부터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.

## 결론

투자계약에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, 회사(또는 이해관계인)은 당연히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그러나 애초에 투자금의 용도를 정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회사(또는 이해관계인)과 투자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, **투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주식매수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.**

결국 회사와 투자자 모두를 위해서도 **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가급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, 그 위반이 문제되어 분쟁이 현실화되었다면 투자계약서에 정한 용도 제한 규정의 문언이나 그 맥락, 투자계약의 작성 경위 등을 정확히 분석, 파악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**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4 SEUM Law.

김진기 변호사

Partner

[jing.kim@seumlaw.com](mailto:jing.kim@seumlaw.com)